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83,273,734	32,498,212
일반회계	927,347,556	27,820,427
특별회계	155,926,178	4,677,785
기타특별회계	155,926,178	4,677,78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3,996	10,3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0,005,207	1,500,156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203,000	186,090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4,920,392	2,847,612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59,744	1,792
수질개선 특별회계	71,108	2,13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98,169	26,945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44,591	22,338
주차장 특별회계	2,679,971	80,39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965,65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